



최근 국세 동향과 개인사업자의 절세 전략

금융자산을 활용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 최선

최근 국세 동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탈세제도, 차명계좌 신고제도 등으로 인해 개인사업자들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국세 동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절세 전략을 세워보자.

2010년 이후 국세 동향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업자에 대한 탈세제보이다. 탈세제보란 탈세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과 그 탈세자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에 제보하는 것을 말한다. 탈세제보로 인해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일정금액의 추징세액이 발생하면 제보자에게 일정비율에 대한 포상금(최대 30억원)을 지급한다. 국세청에는 연일 수많은 제보가 들어온다. 그 중 상당수는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에 의한 제보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업주의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큰 변화는 차명계좌 신고제도를 꼽을 수 있다. 차명계좌 신고란 사업주가 현금매출을 누락시키기 위해 타인 계좌로 이체 받았을 때, 그 이체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타인 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 추징세액이 발생하면 신고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연간 5,000만원 한도)을 지급한다. 이 밖

에도 기타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발급거부 신고 포상금 등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와 같은 제보는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가?

다음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의 주요 항목에 대해서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제도이다. 이때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는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 가공경비 방지를 위한 적격증빙 수취확인, 접대비·차량유지비·복리후생비 등에 개인적 경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는 이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증하고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가공경비 등을 누락시키는 등 편법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2010년 이후 가장 변화된 것이 바로 사업자의 세무 환경이다. 따라서 절세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세금을 안낼 것을 고민하는 것보다 합법적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벌어 놓은 소득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세금 없이 운용할까를 고민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무조사로 인해 몇 년 동안 아꼈다고 생각하는 세금이 일시에 증발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의 세금계산은?

개인사업자란 대표자가 사업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자를 말한다.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1~24.2%(지방소득세 포함)세율을 적용한다. 이에 반해 개인사업자의 소득세율

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6~41.8%(지방소득세 포함)이며, 소득세 과세표준이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 41.8%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절세가 사업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금융상품을 이용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은?

① 금융상품을 활용한 사업소득 절세 전략
개인사업자가 합법적인 절세전략을 위해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자. 우선 종업원을 위한 퇴직연금 가입을 들 수 있다. 종업원의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가입시점에 사업소득의 경비로 인정되어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퇴직금을 퇴직연금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으면 실제 퇴직금 지급 시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에 금융기관으로 예치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사업이 상승국면에 있어 소득이 많은 경우라면 퇴직연금 가입 시 최고 납입금액의 41.8%의 세금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신규 직원을 많이 채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아주 유용한 상품이 될 것이다.

② 금융상품을 활용한 소득 운용 측면에서 절세 전략

세계적연금보험 가입도 권할 만하다. 세계적연금상품의 경우 최고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연간 400만원의 연금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52만8,000원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두 번째, 비과세가 되는 금융상품 가입을 추천한다.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적용하지 않는 상품으로는 주식형 펀드가 있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 대부분의 운용자산이 주식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과세되는 금액이 거의 없다.
세 번째, 비과세저축성 보험의 가입이다. 일정요건을 갖춘 저축성 보험의 경우 운용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
네 번째,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인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사업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이러한 상품 이외에도 비과세나 분리과세(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로 과세종결) 금융상품이 많으므로 자산을 관리하는 PB에게 적합한 상품을 추천받으면 자산 증식과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ㅎ

summary

- ① 종업원을 위한 퇴직연금 납입은 납입시점에 비용 처리된다.
- ② 세계적연금상품의 경우, 최고 400만원 한도로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③ 비과세 금융상품(일정요건의 저축성보험, 주식형 펀드 등)을 이용하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소상인공제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사업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박정국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전문위원
park4060@hanafn.com

▶ **학력·자격증**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2005년(42회) 세무사, CFP(국제공인재무설계사)
▶ **현재 활동**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전문위원
▶ **기타 활동**
한국금융연수원 세무 교수, 한국경제 등 일간지 칼럼 기재,
(전)다함세무법인 근무, (전)LG실트론 세무담당 근무,
(전)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직원 강의